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조례명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·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

## 2. 검토경과

- 가. 제 출 일 : 2017. 4. 28.(금)
- 나. 제 출 자 : 김경환 의원 외 9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5. 8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5.11.(목)

## 3. 제안이유

- 우리구 의원의 청렴한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신뢰확보를 위해 제정 운영 중인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」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 를,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15.3.27.공포, 2016.11.30.시행)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개정(2016.9.28.시행)에 따라 겸직 신고,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지역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가. 제1장 총칙 : 안 제1조 ~ 안 제3조
  - 조례제정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 규정
- 나. 제2장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운영 : 안 제4조 ~ 안 제8조
  - 안 제4조)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규정 : 별표1, 별표2
  - 안 제5조, 안 제6조)윤리심사 대상 및 방법 절차와 겸직사항 신고
  - 안 제7조, 안 제8조)영리행위 제한 및 회의출석에 관한 사항
- 다. 제3장 행동강령 운영 : 안 제9조 ~ 안 제12조
  - 안 제10조)국내외 활동 승인기한 등 규정
  - 안 제11조, 별표3)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 등
  - 안 제12조)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서식 규정
- 라. 제4장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: 안 제13조 ~ 안 제17조

마. 제5장 보칙 : 안 제18조(비밀엄수), 안 제19조(운영규정)

바. 개정사항 반영 등 정비 항목

- 검직사항 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 보완(안 제6조, 안 제7조)
- 회의출석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8조)
-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및 횡수 제한 규정 도입(안 제11조)
- “법” 또는 “영”의 조문내용이 반복 인용되는 사항 삭제

## 5. 제정조례안 : 별첨

## 6. 근거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35조, 제38조, 제57조
- 나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
- 다.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

## 7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7. 4. 24. ~ 5. 1.(7일간), 의견 없음.
- 나.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반영
  - 조례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개선의견인 “성별 구성 비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를 따른다.”를 안 제13조 제1목에 반영

## 8. 검토의견

-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·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는 유사 성격을 가진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」와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를,
-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(일명:청탁금지법)」 제정·시행과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개정사항인 검직신고,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사항 등을 반영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·운영하여,
- 지역의원들의 바른 행동과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으로 주민들의 신뢰와 청렴국가 건설에 앞장서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, 조례입법의 절차수행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검토됨.